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경훈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비롯한 1급 발암물질로 인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는 시장이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제4조의2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)를 신설하여 시장이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요청할 수 있고, 이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